

부산직할시 사하구조례 제 호

#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4명
2. 도시위원회 9명
3. 의회운영위원회 7명

제 3 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사회산업위원회
  - 가. 총무국,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2. 도시위원회
  - 가.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
3. 의회운영위원회
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제 4 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 5 조(상임위원회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6 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한다) 1 인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 7 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 8 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 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 9 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 10 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 11 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 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 12 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13 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